시보

서	기관의 장
선	
람	

all ways INCHEON

제1941호

2021년 6월 22일 화요일

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.

			_
║ 고 시 │			
	그시 테2021 41층 이처경제다오그	¹ 역 송도국제도시 송도랜드마크시티(6	o고그\
│ 입신등학시경제자규구학경 │○ UU-THE HEREN A OLEH EL	고시 제2021-41호 인신경제자유구 하므로 그 !!	-억 중도국제도시 중도텐드마크시디(6	rooT) 2
실시계획(면경) 증인 및 지 	형도면 고시	••••••	•••••

회				
람				



발행 : 인천광역시 편집 : 대변인실

고 시

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1-41호

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송도랜드마크시티(6·8공구) 실시계획(변경)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

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0-93호(2020.11.23.)로 변경·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송도랜드마크시티(6·8공구) 실시계획을 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제9조에 따라 변경 승인한 바, 같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따라 실시계획(변경) 사항을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1년 06월 22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

◈ 변경사유

- 과밀학급 해소 및 통학여건 개선을 위한 송도랜드마크시티 중학교 신설(1개소)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
- ◈ 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사항
- 1.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과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: 변경 없음
 - 가.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 (변경 없음)
 - 나. 단위개발사업지구시행자의 성명 (변경 없음)

- 2. 개발사업의 목적과 개요 : 변경
 - 가. 개발사업의 목적 (변경 없음)
 - 나.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(변경)

그. ㅂ		면적(㎡)		구성1	비(%)	บ] –-
구분	기정	변경	변경후	기정	변경	비고
주택건설용지	1,458,364.8	-	1,458,364.8	25.2	25.2	
단독주택	120,251.0	-	120,251.0	2.1	2.1	
공동주택	1,338,113.8	-	1,338,113.8	23.1	23.1	
근린생활시설	31,352.1	-	31,352.1	0.5	0.5	
상업업무시설용지	807,133.7	-	807,133.7	13.9	13.9	
일반상업	334,149.2	-	334,149.2	5.8	5.8	
국제업무	51,463.7	_	51,463.7	0.9	0.9	
주상복합	421,520.8	_	421,520.8	7.2	7.2	
공공시설용지	3,498,392.9	-	3,498,392.9	60.4	60.4	
도로	661,021.6	-	661,021.6	11.4	11.4	
공원	1,758,969.9	-	1,758,969.9	30.4	30.4	
육지부	989,307.6	-	989,307.6	17.1	17.1	
수로부	769,662.3	-	769,662.3	13.3	13.3	
녹지	110,879.0	-	110,879.0	1.9	1.9	
주차장	35,527.8	_	35,527.8	0.6	0.6	
학교	173,391.1	-	173,391.1	3.0	3.0	•중학교1개소신설 (고교→중고교분리)
공공청사	9,466.9	-	9,466.9	0.1	0.1	
청소년수련시설	3,000.0	-	3,000.0	0.1	0.1	
문화시설	11,424.5	-	11,424.5	0.2	0.2	
종교시설	7,294.9	-	7,294.9	0.1	0.1	
주유소	1,599.5	-	1,599.5	0.1	0.1	
체육시설	717,402.5	_	717,402.5	12.4	12.4	
공급처리시설	8,415.2	_	8,415.2	0.1	0.1	
합계 ※ 기정: 이 첫 과 역 시 7	5,795,243.5	-	5,795,243.5	100.0	100.0	

※ 기정: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0-93호(2020.11.23.)

- 3.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위치와 면적: 변경 없음
- 4. 개발사업시행기간: 변경 없음
- 5. 수용이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: 해당 없음
- 6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 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: 변경 없음 [붙임 1]

- 7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 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: 변경 [붙임 2]
- 8. 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제11조에 따라 의제되는 허가 등이 있는 경우는 그 내용: 변경 없음
- 9.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·수익·관리 및 처분 (처분 방법 및 가격에 관한 사항을 포함)에 관한 계획서: 변경 없음 [붙임 3]

10. 관련도서의 열람방법

- 가. 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제10조 제2항 따라 관계도면은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(개발계획총괄과, ☎032-453-7853)에서 열람 가능합니다.
- 나.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서비스(http://luris.molit.go.kr)에서 열람 가능합니다.
- 다. 지형도면 고시는 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11조제1항제16호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도서로 갈음합니다.

- [붙임 1]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에 따른 도시 관리계획의 결정: 변경 없음
 - ① 용도지역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(변경 없음)
 - ② 지구단위계획구역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(변경 없음)
 - ③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(변경 없음)
- [붙임 2]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: 변경
 - □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(변경)
 - 1.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: 변경
 - 가. 교통시설 (변경 없음)
 - 나. 도시공간시설 (변경 없음)
 - 다. 유통 공급시설 (변경 없음)
 - 라. 공공·문화체육시설 (변경)
 - 1) 학교 (변경)
 - 가) 학교 결정(변경)조서 (변경)

u	도면표시	,1 ,1 <u>-</u> 1	시설의	A) -1		면적(m²)		최초	
구분	번호	시설명	세분	위치	기정	변경	변경후	결정일	비고
		합계			173,391.1	-	173,391.1		
기정	1	학교	초등학교	송도동 309-1학	17,985.9	-	17,985.9	2010.5.11	
기정	2	학교	초등학교	송도동 395-1학	12,316.6	-	12,316.6	2010.5.11	
기정	3	학교	초등학교	송도동 396-8학	14,000.0	-	14,000.0	2010.5.11	
기정	4	학교	초등학교	송도동 399-10학	12,682.6	-	12,682.6	2010.5.11	
기정	5	학교	초등학교	송도동 314-1학	17,767.0	-	17,767.0	2010.5.11	
기정	6	학교	중학교	송도동 308-4학	12,054.9	-	12,054.9	2010.5.11	
기정	7	학교	중학교	송도동 396-9학	14,000.0	-	14,000.0	2010.5.11	
기정	8	학교	중학교	송도동 399-11학	12,673.1	-	12,673.1	2010.5.11	
기정	9	학교	초등학교	송도동 320체	13,171.2	-	13,171.2	2015.12.31	
기정	10	학교	고등학교	송도동 395-2학	12,639.2	-	12,639.2	2010.5.11	
변경	11	학교	고등학교	송도동 313-1학	30,000.3	감) 13,000.0	17,000.3	2010.5.11	
기정	12	학교	유치원	송도동 309-4학	4,100.3	-	4,100.3	2020.4.27	
<u>신설</u>	13	학교	중학교	송도동 313-1학	-	증) 13,000.0	<u>13,000.0</u>		

■ 변경사유서

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11	고등 학교	○ 변경 - 위치: 송도동 313-1학 - 면적: 30,000.3㎡ → 17,000.3㎡ 감) 13,000.0㎡	○과밀학급 해소 및 통학여건 개선 을 위한 고등학교 → 중학교, 고등학교 분리에 따른 변경
13	중학교	○ 시설 신설 - 위치: 송도동 313-1학 - 면적: 13,000.0㎡	○ 중학교 신설

- 2) 공공청사 (변경 없음)
- 3) 청소년수련시설 (변경 없음)
- 마. 환경기초시설 (변경 없음)

2.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분 (변경)

- 가.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 (변경)
- 1) 단독주택용지(D) (변경 없음)
- 2) 공동주택용지(A) (변경 없음)
- 3) 주상복합용지(M) (변경 없음)
- 4) 일반상업용지(R) (변경없음)
- 5) 국제업무용지(B) (변경 없음)
- 6) 근린생활시설용지(CN) (변경 없음)
- 7) 기타시설용지 (변경)
- 가) 학교용지 (변경)

	-1 T		면적(m²)				획지		
도면 번호	가구 번호	기정	증.감	변경	위치		면적(m²)		비고
~ <u>.</u>	也上	∕ 1′8 	∙ი*#	ਹ^ਰ	71/1	기정	증.감	변경	
ES1	_	17,985.9	-	17,985.9	ES1	17,985.9	-	17,985.9	
ES2	_	12,316.6	-	12,316.6	ES2	12,316.6	-	12,316.6	
ES3	_	14,000.0	-	14,000.0	ES3	14,000.0	-	14,000.0	
ES4	_	12,682.6	-	12,682.6	ES4	12,682.6	-	12,682.6	
ES5	_	17,767.0	-	17,767.0	ES5	17,767.0	-	17,767.0	
ES6	_	13,171.2	-	13,171.2	ES6	13,171.2	-	13,171.2	

-н	-1 7	면적(m²) 획지							
<u></u> 도면 번호	가구 번호	기정	중:감	변경	위치		면적(㎡)		비고
70.4	2.4	۷۱٬۵	Ծ*#	ਹ_2	71/1	기정	증감	변경	
MS1	_	12,054.9	_	12,054.9	MS1	12,054.9	_	12,054.9	
MS2	_	14,000.0	_	14,000.0	MS2	14,000.0	_	14,000.0	
MS3	-	12,673.1	-	12,673.1	MS3	12,673.1	-	12,673.1	
<u>MS4</u>	-	-	증) 13,000.0	13,000.0	MS4	_	증) 13,000.0	13,000.0	• 신설
HS2	-	12,639.2	-	12,639.2	HS2	12,639.2	_	12,639.2	
HS3	-	30,000.3	감) 13,000.0	17,000.3	HS3	30,000.3	감) 13,000.0	17,000.3	• HS3(일부) → MS4 (면적: 13,000.0㎡)
KG1	_	4,100.3	-	4,100.3	KG1	4,100.3	_	4,100.3	
계	-	173,391.1	-	173,391.1	-	173,391.1	_	173,391.1	_

- 나) 공공청사용지 (변경 없음)
- 다) 청소년수런시설용지 (변경 없음)
- 라) 문화시설용지 (변경 없음)
- 마) 체육시설용지 (변경 없음)
- 바) 종교시설용지 (변경 없음)
- 사) 주유소용지 (변경 없음)
- 아) 오수중계펌프장용지 (변경 없음)
- 자) 공동구용지 (변경 없음)
- 차) 폐기물처리시설용지(생활폐기물자동집하장) (변경 없음)
- 카) 주차장용지 (변경 없음)
- 나. 건축물에 대한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배치·행태·색채·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 (변경)
 - 1) 단독주택용지(D) (변경 없음)
 - 2) 공동주택용지(A) (변경 없음)
 - 3) 주상복합용지(M) (변경 없음)
 - 4) 일반상업용지(R) (변경 없음)
 - 5) 국제업무용지(B) (변경 없음)

6) 기타시설용지 <u>(변경)</u> 가) 학교용지 <u>(변경)</u>

- 기정

도면번호	구	분		계획내용			
		KG1 ○ 교육연구시설(유치원)					
	용도	허용 용도	ES1~ES6, MS1~MS3, HS2~HS3	○ 교육연구시설(가목에 한함)			
		불허 용도	ㅇ허용용도 이외의	용도			
			KG1	○ 60% 이하			
ES1~ES6,	건폐율		ES1~ES6, MS1~MS3, HS2~HS3	○ 30% 이하			
MS1~MS3,	용건	덕률	○ 200% 이하				
HS2~HS3,	႓႘	<u>^</u>]	○50m 이하				
KG1			일조를 감안하여 배치	각 도로로부터 직각 또는 평행으로 배치하되 부지여건 및 배치하고 운동장은 운동공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			
	배치		따르도록 함	향평가 등에 의해 별도의 이격거리가 제시될 경우는 그에 로변에의 강의동/교실동의 배치를 지양, 소음과 무관한 시설			
			배치				
	형	부각할 수 있는 형태 권장 출되지 않도록 함 원화 하여 도심의 녹지공간 최대한 확보					

- 변경

도면번호	구	·분		계획내용	
			KG1	○ 교육연구시설(유치원)	
	용도	허용 용도	ES1~ES6, MS1~MS4, HS2~HS3	○ 교육연구시설(가목에 한함)	
		불허 용도	○허용용도 이외의	용도	
			KG1	○ 60% 이하	
ES1~ES6,	건피	테 율	ES1~ES6, MS1~MS4, HS2~HS3	○ 30% 이하	
MS1~ <u>MS4</u> ,	용건	적률	○ 200% 이하		
HS2~HS3,	높	<u>-0]</u>	○50m 이하		
KG1			○교사동은 가급적 일조를 감안하여 배치	각 도로로부터 직각 또는 평행으로 배치하되 부지여건 및 배치하고 운동장은 운동공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	
	배치		따르도록 함	향평가 등에 의해 별도의 이격거리가 제시될 경우는 그에 로변에의 강의동/교실동의 배치를 지양, 소음과 무관한 시설	
			배치		
	○시설의 성격을 부각할 수 있는 형태 권장 ○옥상부분 -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함 - 옥상공간을 정원화 하여 도심의 녹지공간 최대한 확보				

- 나) 공공청사용지 (변경 없음)
- 다) 청소년수련시설용지 (변경 없음)
- 라) 문화시설용지 (변경 없음)
- 마) 체육시설용지 (변경 없음)
- 바) 종교용지 (변경 없음)
- 사) 주유소용지 (변경 없음)
- 아) 오수중계펌프장용지 (변경 없음)
- 자) 공동구용지 (변경 없음)
- 차) 폐기물처리시설용지 (생활폐기물자동집하장) (변경 없음)
- 카) 주차장용지 (변경 없음)

다.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 (변경 없음)라.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 (변경)

도면	번호	ત્રીક્ષે∖ા ે				
기정	변경	계획내용				
D1 ⁻	-D4	○ 변경 없음				
A1~A4,	A7~A17	○ 변경 없음				
A5,	A6	○ 변경 없음				
M1-1, M1-	-2, M2~M5	○ 변경 없음				
M	[6	○ 변경 없음				
R	.1	○ 변경 없음				
R3~	-R6	○ 변경 없음				
R	.7	○ 변경 없음				
B1-	-B2	○ 변경 없음				
ES1~ES6, MS1~MS3, HS2~HS3	ES1~ES6, MS1~ <u>MS4,</u> HS2~HS3	○ 변경 없음				
PS1, CO1,	FS1, CO2	○ 변경 없음				
Y	t1	○ 변경 없음				
C	1	○ 변경 없음				
S1 ⁻	-S3	○ 변경 없음				
RL1, RI	L2, RL3	○ 변경 없음				
GS	51	○ 변경 없음				
BP2		○ 변경 없음				
GL1, GL2, CD1		○ 변경 없음				
PL2~PL4		○ 변경 없음				
R2(1	,2,3)	○ 변경 없음				
CN1, Cl	N2, PL5	○ 변경 없음				

②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계획 (변경 없음)

[붙임 3]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·수익·관리 및 처분(처분 방법 및 가격에 관한 사항을 포함)에 관한 계획서: 변경 없음